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47호 2019. 10. 17.(목)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19-126호 도로명 주소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19-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19-1341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
 남해군 공고 제2019-133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9
 남해군 공고 제2019-1362호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3
 남해군 공고 제2019-1386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 19
 남해군 공고 제2019-1391호 공시송달 공고(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25
 남해군 공고 제2019-1400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7

알 림

-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28호 남해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부대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계약체결 공고 38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2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2) 제 647호

2019년 10월 17일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94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0.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연번	중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27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94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37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99-2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94-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17-1	20090427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저리 22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415	20090427	동쪽의 두, 세번째 행정구역이라는 뜻으로 지어 부른 방위지명인 이동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도로임
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142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42-241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43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152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15-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67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32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279번길 25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풍리 817-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남로247번길 28	20090427	남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503-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1066번길 32-9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503-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1066번길 32-11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399-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25번길 101	20090427	양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변 경

연번	지번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1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27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37번길 9-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37번길 6-2	20190927	일제시대 공부 9-2랑 현장에 있는 건물번호판 불일치.. 민원분이6-2 원하심

폐 지

연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059-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03	20190918	건물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폐지

남해군 고시 제2019 - 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대사천)
2. 성 명 : 남해군수(관광진흥담당관)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95-1
6. 점용면적 : 5㎡
7. 점용기간 : 2019. 10. 14. ~ 2022. 10. 13.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1341호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관련)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413, 팩스 860-3739, e-mail : ilgob77@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전화 055-860-3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별표15】 차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관련) 가.~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u> 카.~하. (생략)</p>	<p>【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관련) 가.~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u>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u>)</u> 카.~하.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19 - 133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2-37호)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4.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10) 제 647호

2019년 10월 17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분	종류	위치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 도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소로	2	37	8	8	237	8	71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사업기간 : 2018.9.27. ~ 2020.2.29.

5. 공람기간 :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소유권 변동사항 정정 및 누락지번 추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1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조서

1.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소로 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1	남해읍 아산리	419-7	대	18	18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19-14	대	3	3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98		국(국토교통부)	-	
4	남해읍 서변리	323-1	전	86	79		남해군	-	
5	남해읍 아산리	406-4	전	81	60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06-2	도	33	30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05-1	대	13	7		남해군	-	
8	남해읍 서변리	311-1	전	3	3		남해군	-	
9	남해읍 서변리	311-2	도	43	42		남해군	-	
10	남해읍 서변리	311-10	대	8	8		남해군	-	
11	남해읍 서변리	324-1	전	7	7		남해군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28		남해군	-	
13	남해읍 서변리	323-2	도	69	44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11-11	대	3	3		남해군	-	
15	남해읍 서변리	309-2	도	684	139		남해군	-	

남 해 군 공 보

(12) 제 647호

2019년 10월 17일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 종류	규격	편입 면적 (㎡)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리	지번 (당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서변리	311-3	주택	블럭스레트	69	㎡	남해읍 서변리	이○봉	대구 달서구	대구신 용보증 재단	가압류	
			가추1	벽체이용 스레트	6	㎡						
			가추2	선라이트	12	㎡						
			가추3	목조스레트	18	㎡						
			화장실등	블럭스레트	15.75	㎡						
			아래채	블럭스레트	40.5	㎡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3	㎡						
			물탱크	철재지지대 포함	1	식						
			대문	새시조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32	㎡						
			아궁이		1	식						
			석류	R25	1	주						
			화단	2*5	1	식						
								대구 동구	이○숙	가압류		
								서울 종로구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 사	가압류		
								대구 수성구	이○을	근저당		
								대구 수성구	정○수	근저당		
								서울 강남구	메가주 식회사	근저당		

남해군 공고 제 2019-1362 호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08일

남 해 군 수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해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 감면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다.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 마.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용자금의 조건(안 제9조 ~ 제11조)
- 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5조)
- 사.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10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38, 팩스 055-860-3739
e메일 lsmnice12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전화 055-860-3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해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및 가로환경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 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 편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군수가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함을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 주최·주관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4조의 “주민협의체”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해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기능은 남해군 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7. 지역 및 관광개발에 관련된 전략계획 수립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용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용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용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용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용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해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1386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생활안정기금 사업이 정부의 융자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이용자가 융자조건이 유리한 정부사업을 선호하고 있어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과 소득향상 등 기금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여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현행 :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변경 : 남해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생활안정기금 내용 폐지

다. 자활기금 용도 확대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 일을 통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지원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10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종합사회복지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5,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전화 055-860-3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를 “남해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남해군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장 사업비 등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복지정책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남해군의 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완료 보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자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 업무는 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남해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한 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남해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제2항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용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제13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용자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용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등이 용자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적립된 남해군 생활안정기금의 채권과 예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거나, 남해군 자활기금으로 귀속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된 생활안정기금 용자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등은 만기상환 또는 전액 반납할 때 까지 자활기금계좌로 유입하여 자활기금으로 활용한다.

남해군 공고 제 2019 - 1391호

공시송달 공고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의 동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15.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31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4. 공고기간 : 2019. 10. 15. ~ 2019. 10. 29.(14일간)
-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2019. 10. 7. ~ 2019. 1. 7.(3개월간)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294)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남해읍 안리	211-2	-	도	307.0	307.0	남해읍 북변동 569	김선생				
2	남해읍 안리	205-2	-	도	89.0	89.0	남해읍 북변리 484	감희규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1400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필수 조례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구역 및 관리 (안 제3조 ~ 제15조)

다. 상인회 및 시장관리 (안 제16조 ~ 제32조)

라. 부칙(안 제1조 ~ 제3조)

1)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 용적률, 건폐율

- 남해군 건축조례 : 건축높이의 제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10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94, 팩스 055-860-37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전화 055-860-3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실(모유수유·착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 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④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5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인조직 등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가 상실된 편의시설을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등이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상인조직 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상인조직 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남해군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용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및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듣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 시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등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 설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설시장에 관하여는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 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군·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이 상인조직 등에게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장 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는 관리위탁의 대상범위 및 관리위탁 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때에는 입점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 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알 림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28호

남해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부대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계약체결 공고

하수도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항에 따라 「남해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부대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1. 관리대행의 목적

하수도법 제19조의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자에게 남해군 공공하수도 시설 53개 및 분뇨처리시설을 관리대행 함으로써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

시 설 명	처리용량 (m ³ /일)	주요처리공법	비 고
54개소	10,699		
남해읍 하수도시설	5,600	산화구법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도시설 52개소	5,049	붙임	내역 붙임
분뇨처리시설	50	세일바이오공법	

3. 관리대행 기간 : 2019.10.01 ~ 2022. 09. 30. (3년간)

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

대표사 : (주)이산 대표 이원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공동사 : (주)성일엔텍 대표 박구현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번길 26-12

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 : 군비(연간 2,285백만원)

남 해 군 공 보

(40) 제 647호

2019년 10월 17일

단순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 현황

연번	지역	시설명	시설용량 (m ³ /일)	공법	사용개시일
1	남해읍	남해읍	5600	산화구법	2001.03.31
2		토촌	48	HBR-2	2010.01.25
3	이동	용소	110	HBR-1	2010.01.25
4		미국마을	30	SNR	2009.01.14
5		신전	50	HBR-1	2010.01.25
6		금평	45	NIX	2010.01.25
7		화계	80	SMMIAR	2010.01.25
8		원천	150	ESSA	2016.06.01
9		초음(다천)	90	SBF	2012.01.01
10	삼동	독일마을	150	HBR-2	2006.01.01
11		물건	100	HBR-1	2010.01.29
12		봉화	30	SMMIAR	2008.12.00
13		영지	100	DBS	2010.01.25
14		원예예술촌	100	ABR	2007.01.00
15		은점	100	HBR-1	2010.01.25
16	남면	구미	50	ASA	2010.01.25
17		상가	60	SNR	2008.02.01
18		양지	65	SNR	2000.04.00
19		평산	75	AOSB	2008.10.30
20		유구	50	SNR	2009.01.14
21		운암	40	B3	2010.01.25
22		사촌	60	KDHST	2010.01.25
23		선구	40	ASA	2010.01.25
24		항촌	100	YM	2001.09.01
25		가천	40	OMA	2010.01.25
26		홍현	55	ASA	2008.10.30
27		당항	200	SNR	2018.10.08
28	석교	40	VFT	1997.03.23	
29	서면	작장	30	SMMIAR	2010.01.14
30		장항	80	SNR	2010.01.29
31		서상	120	ASA	2012.01.01
32		대정	120	SNR	2012.01.01
33	고현	고현	400	SMMIAR	2014.09.00
34		차면	60	HBR-1	2010.01.25

35	설천	진목	110	SNR	2010.01.29	
36		고사	30	KSBNR	2010.01.25	
37		모천	50	SBF	2008.10.30	
38		문항	60	SNR	2010.01.14	
39		문항신설	30	JSBR	2017.09.20	
40		봉우	48	DBS	2010.01.14	
41		금음	200	SMMIAR	2010.06.00	
42		왕지	50	SBF	2008.10.30	
43		노량	80	SBF	2010.01.14	
44		노량생태	300	COSBR	2001.06.00	
45		월곡	40	SBR	2010.01.25	
46		창선	창선	470	SMMIAR	2009.05.11
47			광천	85	SNR	2017.10.01
48	냉천		110	HBR-1	2010.01.29	
49	단항		300	DBS	2010.01.25	
50	당저		30	NIX	2010.01.14	
51	식포		30	SNR	2010.01.14	
52	장포		58	SMMIAR	2010.01.25	
53	적량		100	B3	2010.01.25	
54	분뇨처리시설		50	세일바이오통법	2007년	